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5. 21

제 출 자 : 북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본 제정조례안 중 상위 관련 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(2008.2.29 법률 제8852호)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법률용어의 정확성, 평이성, 간결성이 결여된 조항에 대하여는 조문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 수정내용

- 가.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명시한 조항 중 불필요한 (당연임명직), (위촉직), (위촉직) 을 삭제 (안 제5조4항)
- 나.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사항 중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9조제2항 3호)
- 다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(2008.2.29 법률 제8852호)의 제8조제2항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수정(안 제11조제3항)
- 라. 조문의 정확성, 평이성, 간결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(안 제13조제1항,제2항)

3. 수정조례안 : 별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4항 중 1호, 2호, 3호 각 끝 부분의 “(당연임명직)”, “(위촉직)”, “(위촉직)”을 삭제 한다.

안 제9조제2항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한다

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

안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< 생 략 >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<u>기획예산과장, 도시디자인과장(당연임명직)</u> 2. <u>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(위촉직)</u> 3. <u>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</u></p> <p>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< 생 략 >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 <u>기금계산에 관한 사항</u> 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③ < 생 략 ></p> <p>제11조(기금결산) ① - ② < 생 략 > ③ <u>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<u>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</u> ② <u>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< 원안과 같음 > ④ < 원안과 같음 ></p> <p>1. <u>기획예산과장, 도시디자인과장</u> 2. <u>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</u> 3. <u>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</u></p> <p>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< 원안과 같음 > ② < 원안과 같음 ></p> <p>1. < 원안과 같음 > 2. < 원안과 같음 > < 삭 제 > 3. <u>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③ < 원안과 같음 ></p> <p>제11조(기금결산) ① - ② < 원안과 같음 > ③ <u>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</u>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<u>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법률 제8974호, 2008.3.21개정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증지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시 보조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정비, 간판시범거리 조성,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(안 제1조)

- 기금 설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함

나. 기금의 재원은 증지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 등(안 제2조)

-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, 증지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일 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, 보조금 등으로 조성

다.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,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(안 제3조)

-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개선,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,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

라.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
-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
- 다.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(안 제9조, 제11조)
-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고,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함

3. 제정근거

- 가.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[2008.3.21 법률 제8974호] 제5조의2, 제6조의2
- 나.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[2008.10.29 대통령령 제21098호]
제37조의2, 제37조의3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세입세출예산의 별도조치(기획예산과)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9.4.9~4.29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4.30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6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 구조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기획예산과장, 도시디자인과장(당연임명직)
2.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(위촉직)
3.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

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2. 기금결산보고서안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회계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도시관리국장

2. 기금출납원 : 광고물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금결산)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기금관리 장부의 비치)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·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기금출납부

(단위 : 원)

년월일	적 요	수 입	지 출	잔액